

#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(전환사업)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		
사업비 (당해년도)	25,222,500천원	(국비)	(시비)25,222,500천원
		기타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스마트건강과	이응창 2133-7560	이미점 2133-7576	신현정 2133-9686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
계	(x-) 30,627,000	(x-) 25,222,500	(x-) △5,404,500	(x-) △18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-) 30,627,000	(x-) 25,222,500	(x-) △5,404,500	(x-) △18

#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	=	25,222,500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
	1,002,500원*25,159.6,009명

### 3 사업 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#### □ 사업근거

- 모자보건법 제3조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32조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

#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(연례반복)
- 지원대상
  - 기본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  - 예외지원 대상
    - 소득기준 없이 지원 :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(단축 및 표준시간만 가능)
- 지원기간 : 태아유형(단태아, 쌍태아, 삼태아 이상), 출산순위(첫째아, 둘째아, 셋째아)에 따라 단축, 표준, 연장(5~25일) 차등 지원
-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
  - 산모건강관리 지원 : 산후 부종관리, 좌욕지원, 산모 위생관리
  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관리, 수유지원, 예방접종 지원
  - 가사활동 지원 : 산모식사 준비,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의류 세탁 등
- 이용절차 : (대상자) 서비스 신청 → (보건소)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→ (대상자)대상자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→ (대상자) 서비스 이용

-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, 서비스 품질 관리
- 소요예산 : 25,222,500천원(전액 시비)
  - 2단계 전환사업(지방이양사업) 국비분 보전금 교부예정(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-3461, '21.10.05.)

## □ 추진경위

- '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시작
  - 지원 대상 : 최저생계비 130%이하 출산 가정→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%이하('06.10.4)
- '07년 지원 대상 기준 조정, 본인부담금 신설
  -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%이하→전국가구평균소득 65%이하
- '08년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, 지원 대상 기준조정 및 본인부담금 체계 마련
  - 전국가구평균소득 65%이하→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
- '12년 전자바우처 자체운영체제로 전환,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
- '14년 제공인력 명칭 변경
  - 산모신생아 도우미 →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
- '15년 지원기준 소득상향
  -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→전국가구평균소득 65%이하
- 국민행복카드로 통합결제운영('15년 7월)
- '16년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65%→80%이하
- '16년 부터 서울시 예외지원 추진
  - '16.~'17.7월 :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이하 중 7가지 조건 충족 산모
    -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,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)
  - '17.8월~12월 : 예외지원 확대 및 대상자별 소득기준 차등 지원
    - 소득기준 없이 모두 지원 대상자 :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,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)
    -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이하 : 쌍생아 출산 가정, 둘째아 출산 가정
- '20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% →120% 이하
  -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,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 지원

- '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20% → 150% 이하
- '22.3.15~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대상지원

□ 2023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5,222,500	
기본계획 수립	2023.01~2023.01		기본사업계획수립
1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	2023.01~2023.03	6,305,625	예산교부 및 사업수행
2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	2023.04~2023.06	6,305,625	예산교부 및 사업수행
3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	2023.07~2023.09	6,305,625	예산교부 및 사업수행
4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	2023.10~2023.12	6,305,625	예산교부 및 사업수행
교육 및 홍보	2023.01~2023.12		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관련 교육 홍보

**4**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0년도	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: 11,702명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교육운영 실적 : 20개소/186회/1,140명
2021년도	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: 18,325명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교육운영 실적 : 19개소/196회/1,140명
2022년도	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: 25,189명('22.11월말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및 저출산 해소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1	(x20,418,000 ) 30,627,000	(x-) 0	(x-) 0	(x20,418,000 ) 30,627,000	(x20,418,000 ) 30,627,000	(x-) 0	(x-) 0